
중견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서

2014. 7. 7

중견기업,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대기업과 달리해야

1. 현황

-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, 2013년부터 그 평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
 -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2013년부터는 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
 - 2011년 대기업 56개였으나, 2013년 108개사(중견 20개사), 2014년 134개사(중견 40개사)로 확대
-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‘공정거래 및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’와 1·2차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‘중소기업 체감도 조사’를 50:5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계산

[표]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

구분	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실적평가	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
대상	대기업	협력(1·2차) 중소기업
주체	공정거래위원회	동반성장위원회
방식	대기업별 실적 평가(정량)	중소기업 체감도 조사(정성)
시기	하반기(연1회)	상·하반기(연2회)
주요 평가 항목	1. 협약내용의 충실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- 지원내용의 규모·정도 - 1차협력사의 2차협력사 지원방안 도입계획 2. 협약내용의 이행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이행정도 -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- 1차협력사의 2차협력사 지원실적 	1. 거래관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정한 거래관계 - 거래조건 등 2. 협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금, 연구개발, 생산분야 - 판로, 경영혁신, 인력분야 등 3. 동반성장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식 및 비전공유 - 추진체계, 환경조성 등
가·감점 항목	3.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(가점) 4. 하도급법 위반,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(감점)	4. 적합업종 이행, 성과공유제, 협력이익배분제, 투자 및 지원 참여(가점) 5. 적합업종·가이드라인 불이행, 골목상권 침해, 사회적 물의(감점)

출처: 동반성장위원회(www.winwingrowth.or.kr)

2. 문제점

-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
 - 중견기업은 자금, 기술, 인력, 판로 등 제반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없음
 - 그러나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작은 중견기업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
 - 실제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었으며, 중견기업은 주로 최하위 단계인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
 - 평가단계는 4단계로 ‘최우수’ 14개사, ‘우수’ 36개사가, ‘양호’ 36개사, ‘보통’ 14개사로 평가했으며, 중견기업은 12개사 중 8개사가 가장 낮은 ‘보통’ 등급을 받았고 ‘최우수’ 등급은 전무한 상황¹⁾
-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.7% 수준(한국은행)인데,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중견기업은 4.7% 수준에 불과
 -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의 경우 중견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약 593억원으로 대기업(약 5,572억원)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으며,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대기업(6.4%)보다 낮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
 -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중견기업은 결국 낮은 등급으로 갈 수 밖에 없음
 -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하므로 중견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유리
-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중견기업이 동반지수평가에서 하위권에 포함되면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대외신인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
 -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규제로 변질 될 가능성이 존재
 -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‘대·중소기업

1) 동반성장위원회, “2013년 동반성장지수 산정발표”(2014. 6. 11 보도자료)

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' 개정을 통해 대상기업 확대 및 동반위에게 평가지수 자료요구권 부여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²⁾

-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경우 산업 특성에 따른 중견기업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
 - 일부 업종의 경우 시장환경 변화 및 업종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자율적 동반성장이라기 보다는 강제적 성격의 동반성장이 될 수 있음
 - 제품순환주기가 빠르거나, 특정 협력사와의 거래의존도가 낮은 중견기업은 협력사 지원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

<기업사례>

- 중견기업 A사는 휴대폰 부품을 생산,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협력사로 '14년 동반성장평가대상 기업으로 선정. 휴대폰의 경우 순환주기가 매우 빨라 신제품 출시마다 2·3차 협력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임

3. 개선방안

- 산업혁신운동 3.0 등 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추가적인 가산점을 부여
 -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혁신운동 3.0 사업에서 중견기업 15개사는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현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
-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대기업과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마련
 -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

2) 박충렬, “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와 제도 개선 과제”, (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, 2014. 7. 1)